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제정 2002. 6. 21.
개정 2003. 3. 20.
개정 2004. 3. 16.
개정 2007. 3. 21.
개정 2016. 7. 5.
개정 2017. 4. 4.
개정 2021. 9. 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3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업무대행자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중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제3조 (업무대행건축사) 업무대행건축사는 대구광역시장이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한 업무대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대행건축사 선임 및 확정 통보) ① 허가권자는 조례 제24조 제13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의 선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자문서 등으로 협회에 업무대행건축사 선임을 의뢰하고, 협회는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를 확정하여 신청인과 업무대행건축사에게 통지한다.

② 업무대행건축사 선임 방법 등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③ 업무대행건축사 선임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현장조사업무 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사전에 협회에 임시제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해 치료 또는 입원하게 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하게 된 경우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임시제외 신청 없이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된 업무대행건축사가 제3항의 사유로 조사·검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선임 포기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업무대행건축사를 재선임하여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업무대행건축사는 당해 회차에서는 선임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업무대행건축사 선임제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조례 제24조 제10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대행건축사가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일정기간 업무대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조 (업무대행건축사 선임대장 작성) 협회는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임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사용승인 업무대행건축사 선임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대행건축사 업무범위) 업무대행건축사의 업무범위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호 서식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상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로 한정한다.

제8조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① 업무대행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대상” 일 경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을 득한 도서를 열람하고, 자문내용의 이행여부를 포함하여 조사·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업무대행건축사는 조례 제24조 제5항에 의거 허가권자로부터 업무대행건축사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현장조사·검사를 실시하여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건축사 직접 현장조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계자(또는 감리자)는 이를 협회에 통지할 수 있으며, 협회는 업무대행건축사를 다시 선임하여 허가권자에게 통지한다. 이때 최초 업무대행건축사는 당해 회차에 선임된 것으로 하고, 대행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업무대행자 증명서) <삭 제>

제9조 (운영재원) ① 협회는 이 규정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이하 “운영재원” 이라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회비<개정 2017.4.4.>
2. 기타수입금

③ 협회는 운영재원을 이사회에서 이 규정 및 본 건축사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다.

제10조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대행 수수료는 조례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협회는 제4조 제1항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임·통지한 건에 대한 대행 수수료를 일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4.4.>

③ 제1항에 따른 대행 수수료 지급 시 업무대행건축사가 협회에 납부할 의무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제 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건축사 선임 등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회비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회비는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협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다.<개정 2017.4.4.>

제13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일괄청구 등) <삭 제>

제11조 (문서보존) 협회는 이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보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사용승인 업무대행건축사 선임의뢰서 - 3년
2. 건축물사용승인 업무대행건축사 선임대장 - 20년
3.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수수료의 일괄청구와 관련된 서류 - 3년
4. 기타서류 - 3년

제12조 (행정부서와의 협조) 협회는 이 규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

자와 상호 협조하도록 한다.

제13조 (결산) 제9조 규정의 운영재원의 결산은 협회 회칙에 준한다.

제14조 (감사) 감사에 대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감사규정에 준한다.

제15조 (유권해석)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 회칙에 준한다.

② 이 규정 운영상 필요한 유권해석은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시행지침) 이 규정 운영상 별도의 시행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2.7.10 제정)

제1조 (시행일등) ① 이 규정은 2002. 7. 10.부터 시행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행수수료 또는 허가권자의 업무 대행비 지급액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현실화될 때까지만 적용한다.

제2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접수한 것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규정 개정직후 시행한다.

부 칙 (2016. 7. 5)

제1조 (시행일 등) ①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제25조의 시행일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 4. 4)

제1조 (시행일 등) ① 이 규정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7)

제1조 (시행일 등) ① 이 규정은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5579호)의 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의 개정규정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장이 최초로 작성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건축물사용승인 업무대행건축사 선임 의뢰서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시 공 자	
설 계 자		감 리 자	
설계자 사무소명		감리자 사무소명	
허 가 번 호		허 가 일	
건축물 용도		건축물 동수	
건축물 구조		건축물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 축 면 적	m ²	연면적 합계	m ²
건 폐 율		용 적 율	
※지정 업무대행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면허번호
			건 축 사 명

참고 : (※)는 본 건축사회 기재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건축사 선임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구청장(군수)

전 화 :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발행번호 번

업 무 대 행 건 축 사 선 임 통 지 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24조 제5항에 의거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여 통지합니다.

업 무 대 행 자	<input type="checkbox"/> 건 축 사 명 :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면 허 번 호 : <input type="checkbox"/> 사무소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사 무 소 명 : <input type="checkbox"/> 사 무 소 전 화 : <input type="checkbox"/> 이 동 전 화 : <input type="checkbox"/> 사 무 소 주 소 :
업 무 대 행 대 상	<input type="checkbox"/> 대 지 위 치 : <input type="checkbox"/> 건 축 주 명 : <input type="checkbox"/> 허 가 번 호 : 제 호 (. .) <input type="checkbox"/> 설 계 자 : <input type="checkbox"/> 감 리 자 : <input type="checkbox"/> 설계자사무소 : <input type="checkbox"/> 관리자사무소: <input type="checkbox"/> 건축규모 및 용도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용 도 : <input type="checkbox"/> 대 상 상기 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20 년 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 장

업무대행 선임 포기서

발행번호	
대지위치	
허가번호	
용도	
연면적	
건축주	
설계자 (성명/사무소명)	
감리자 (성명/사무소명)	

본인은 금회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된 상기 건에 대해 _____의 사유로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이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_____ (인)

사무소명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용승인업무 업무대행건축사 선정 대장